흙막이공사(Earth Anchor 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(총칙) 제6장(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) 제2절(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 및 제2편(안전기준) 제4장(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) 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 규정에 따라 흙막이공사 중 어스앵커공법을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어스앵커공법으로 흙막이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정착장: 지반의 붕괴예상선 안쪽의 원지반에 형성하여 천공 홀에 주입하는 주입재와 주변지반과의 마찰저항이 굴착면의 주동토압에 반하는 힘을 발생하도록 하는 부위를 말한다.
- (2) 자유장: 정착장 끝에서 흙막이벽 외면의 지압판까지의 길이를 확보하여 주는 부위를 말하며, 이는 하중의 작용에 따라 길이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한다.
- (3) 띠 장 : 수평토압을 어스앵커의 정착부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 재를 말하며, 띠장을 이을 때에는 모재의 강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이음 으로 하여야 한다.
- (4) 좌 대 : 이중 띠장인 경우에 지압판을 설치하기 위한 틀을 말하며, 이는 어스앵커 강선과 지압판이 직각이 되도록 경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.